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연철흠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충북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
-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

(안 제8조~제11조)

-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)
-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시·군 및 법인·단체에게 경비보조를 규정함(안 제14조)
-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다른 시·도, 기초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(안 제 15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충청북도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,
 -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(안 제3조)
 -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5조)
 -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(안 제7조)
 -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(안 제8조~제11조)
 -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 등을 규정하였음.
- 도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정치적

인 편향성 문제 등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은 오늘날 더더욱 중요한 실정이 되었음. 따라서 정치적 지향점과는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은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사업을 추진할 때,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방법,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도민의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부. 끝.